

약관 변경 신 · 구조문대비표

순번	약관명	기존	개정(안)
1	근저당권설정계약서	<p>제2조(근저당권의 효력범위)</p> <p>① 이 근저당권의 효력은 현재 근저당 물건에 부합·종속되어 있거나 장차 증축·개축, 수리·개조 및 추가설비 등을 원인으로 부합·종속하게 될 건물, 공작물, 기계기구, 갱도, 궤도설비, 기타 모든 물건에도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한다.</p>	<p>제2조(근저당권의 효력범위)</p> <p>① 근저당권의 효력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및 그 이후에 수리, 정비, 구조변경 또는 개조, 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본 근저당물건의 부합물 및 종물에도 미친다.</p>
2	판매카드약관	<p>제10조(대금결제)</p> <p>④ 회원은 예금잔액 및 대출한도가 결제 대금에 미달하여 제 1항의 기일에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변제일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연체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연체료: (연체금액-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) x 연체이율 x 연체일수 /365</p>	<p>제10조(대금결제)</p> <p>④ 카드이용대금 및 연회비, 수수료 등이 결제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그 결제일의 다음날부터 그 결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편널기 *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연체료로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연체료: (연체금액-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) x 연체이율 x 연체일수 /365(윤년은 366)</p> <p>* 연체이자를 산정할 경우 결제일 다음날과 변제일 중 하루만 포함</p>
3	구매카드약관	<p>제10조(대금결제)</p> <p>④ 회원은 예금잔액 및 대출한도가 결제 대금에 미달하여 제 1항의 기일에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제일부터 변제일전일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연체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연체료: (연체금액-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) x 연체이율 x 연체일수 /365</p>	<p>제10조(대금결제)</p> <p>④ 카드이용대금 및 연회비, 수수료 등이 결제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그 결제일의 다음날부터 그 결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편널기 *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연체료로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연체료: (연체금액-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) x 연체이율 x 연체일수 /365(윤년은 366)</p> <p>* 연체이자를 산정할 경우 결제일 다음날과 변제일 중 하루만 포함</p>
4	판매카드약관	<p>제11조(자동대체결제)</p> <p>② 카드사는 제 1항의 자동대체결제계좌가 대출 또는 차월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대출 또는 차월약정 한도내에서 카드사가 정하는 출금 우선 순위에 의하여 자동대체결제방식으로 인출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.</p>	<p>제11조(자동대체결제)</p> <p>② 카드사는 제 1항의 자동대체결제계좌가 대출이 가능한 계좌인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내에서 결제계좌 개설기관과 회원이 약정한 출금 우선 순위에 의하여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.</p>
5	구매카드약관	<p>제11조(자동대체결제)</p> <p>② 카드사는 제 1항의 자동대체결제계좌가 대출 또는 차월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대출 또는 차월약정 한도내에서 카드사가 정하는 출금 우선 순위에 의하여 자동대체결제방식으로 인출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.</p>	<p>제11조(자동대체결제)</p> <p>② 카드사는 제 1항의 자동대체결제계좌가 대출이 가능한 계좌인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내에서 결제계좌 개설기관과 회원이 약정한 출금 우선 순위에 의하여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.</p>